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6. 5 선고 2023가단717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

변 론 종 결 2024. 5. 1.

판 결 선 고 2024. 6. 5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 중 2/9의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와 소외 C사이에 2023.08.03.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 B은 소외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 :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.

나. 판단 : 소외 C의 상속포기(이 법원 2023느단10483)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고)

2. 소송비용

별지 부동산등기부 등기원인에 '2023. 8. 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'으로 기재되어 있는바,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, 피고의 아들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.

판사 고상교

별지